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3 발의연월일: 2025. 2. 18.

발 의 자: 강명구·이인선·엄태영

임이자 • 구자근 • 서명옥

김태호 · 김 건 · 이성권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 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조의2(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
	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
	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
	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
	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
	서 공제한다.